「구미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발 의 자: 김종화 의원 외 1인

2. 찬 성 자: 김춘남 의원 외 5인

3. 제안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도서관 제적·폐기 도서의 재활용 근거를 마련하고 부대시설 사용료 징수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도서관 운영의 효율성과 공공성을 제고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 개정

나. 시장의 책무(안 제4조)

다. 도서관관리·운영기본계획의 수립(안 제5조)

라. 운영위원회(안 제6조 ~ 제15조)

마. 관리·운영(안 제16조 ~ 제28조)

5.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도서관법」 제3조, 제34조
- 「도서관법 시행령」 제33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
- 「지방자치법」 제156조, 제157조

6.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도서관 제적·폐기 도서의 재활용 근거를 마련하고 부대시설 사용료 징수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도서관 운영의 효율성과 공공성을 제고하고자 함.

○ 검토 결과

- 구미시립도서관의 관리·운영과 부대시설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 조례 전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제적·폐기 도서의 재활용은 폐기비용 절감과 지식자원 재공유 측면에서 긍정적이나, 무상배부 대상과 기준 및 절차를 명확히 마련하여 특정인에 대한 특혜가 발생하거나 「공직선거법」 등 관계 법령에 저촉되지 않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